

의안번호	제 76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(안 제3조)
 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→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징수교부금)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충청북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 <u>법 시행령</u>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 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조(징수교부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징 <u>수법 시행령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관계 법령

□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

제3조(징수교부금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충청북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

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제24조(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 징수의 위임 등)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(시·군·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·군·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)은 100분의 3으로 한다.